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10일, 서삼석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
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 의원)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

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성민)

1. 어선원 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 어선원 직접지불제도¹⁾는 어선원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의 유지를 위해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세대 4,500만원 미만인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세대 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함.

< 개정안 관련 경위 및 현황 >

□ 추진 경위

○ 자격요건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국회 지적과 현장 민원 발생

- ('23 결산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적사항): 지원대상 인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자격 요건 설정 필요(어선원 직불 승선요건의 엄격한 기준)
- ('24 결산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적사항): 지원대상 추계 정확성 제고, 지급요건 과도에 따른 탈락자 다수 발생에 따라 소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 필요

□ 어선원 직접지불제의 대상 및 지급현황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 연 130만원 지급(가족어선원, 어선의 소유자는 제외)
- ('23) 97억원, 7,458명 → ('24) 97억원, 7,502명 → (25) 89억원, 6,900명

자료 : 해양수산부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3.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대 단위로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어선원 직접지불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 시 연간 1만 5,000명에게 직
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신청자 수는 6,900명에서
7,500명 수준에 그치는 등 사업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 어선원 직불제 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예산편성	본 예산	18,000	19,500	18,490	18,490
	계획인원	15,000명	15,000명	15,000명	15,000명
실집행실적	(집행률)집행액	(49.7%)8,950	(49.6%)9,665	(51.5%)9,517	-
	지원인원	7,458명	7,502명	6,900명	-

자료 : 해양수산부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산자원 감소 및 유류비 상승 등
으로 인하여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대
체²⁾ 등의 영향으로 어업인의 입장에서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했
야 하는 ‘최소 승선 일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구체적인 총 승선일수에 대한 기준 없이 최초 승선일
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³⁾ 승선일수가 상

2) 외국선원(명) : ('21) 13,894 → ('22) 14,281 → ('23) 16,083 → ('24) 17,689 → ('25) 19,100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8조의4에 따라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선원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

대적으로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승선일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승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직불금 대상이 되어 승선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4)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2024년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한 7,502명 중 6.5%에 해당하는 486명은 실제 조업수가 60일 미만임에도 다른 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13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음.

< 어선원 직불금 수령현황('24) >

승선일수	승선 인원수(A)		직불금 수급자 수(B)		승선인원 수 대비 수급비율 (B/A)
합 계	87,935		7,502		
30일 미만	38,171	43.4%	361	4.8%	0.9%
30일 이상 ~ 60일 미만	8,532	9.7%	125	1.7%	1.5%
60일 이상 ~ 90일 미만	8,146	9.3%	284	3.8%	3.5%
90일 이상 ~ 120일 미만	6,880	7.8%	526	7.0%	7.8%
120일 이상 ~ 150일 미만	6,627	7.5%	897	12.0%	13.5%
150일 이상 ~ 180일 미만	5,968	6.8%	1,257	16.8%	20.3%
180일 이상	13,611	15.5%	4,050	54.0%	27.8%

* 출처: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출입항신고자료('24 어선원 직불 대상)

** 승선실적 있는 근해어선원(12,762명) 중 39.9%(5,098), 연안어선원(77,795명) 중 3%(2,402) 수급

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별지 제12호의7서식)”에서 승선사실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승선기간으로 기재하도록 함

4) (사례) - 1.1~6.30(6개월) 기간 중 총 승선일수 50일 → 수급 가능

- 1.1~5.30(5개월) 기간 중 총 승선일수 90일 → 수급 불가

□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제의 자격 요건을 승선기간에서 승선일수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⁵⁾(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과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자격 요건을 연중 60일 이상 어업종사자로 개정할 경우 추가 지급인원은 4,800명에서 5,4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예산은 62억원에서 70억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불합리한 승선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총 승선일수 요건을 60일로 명확히하여 다소 불합리한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선교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